

## 교직과정 운영규정

**제 1 조 (목적)**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시행령 규칙에 의하여 교직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 (적용범위)**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전공(학과)의 학생으로서 졸업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**제 3 조 (교원양성위원회)** ①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교직과정의 설치·운영, 교육실습 및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한다.

**제 4 조 (설치전공 및 승인정원)** 본 대학교의 교직과정 설치전공과 그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치승인에 의하여 <별표 1>과 같다.

**제 5 조 (이수신청)**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희망하는 자는 제1학년 2학기말 소정의 기간중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(별지제1호서식)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 6 조 (이수예정자의 확정)** ① 교직과정이수자의 선발은 전조에 의한 이수신청자중 제1학년, 제2학년 전과정의 성적평점평균에 의하여 제4조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. 다만, 인성·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 할 수 있다.

② 제2학년에 재입학 또는 편입학자는 제4조에 의한 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적대학 성적 평균평점 순으로 선발 할 수 있다.

③ 3학년에 재입학 및 편입학 한자가 교직과정을 계속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4조에 의한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본 대학 2학년 및 전적대학 2학년 과정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서 제3학년 최초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 보관한다.

**제 7 조 (교직과목 및 기본이수영역)** ①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, 교직과정에서 이수할 과목과 그 학점은 <별표2>와 같다.

②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, 교직과정설치전공별 ‘기본이수영역(교원자격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영역·과목으로서 반드시 이수해야함)’은 <별표3>과 같다)

**제 8 조 (이수학점과 인정)** ① 교직과목은 제2학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, 2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전공과목은 교원자격표시과목에 관련된 당해 학부의 전공과목으로서 기본이수영역(21학점(7과목이상)이상 이수)을 포함하여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전공과목의 성적은 이수학점이 50학점을 초과하더라도 이수학점 전부를 합산하여 평점을 산출한다.

④ 졸업 전공과 교직 각각 평균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전공75점 이상, 교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. 평균성적의 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.

**제 9 조 (교직과정 이수포기)** ①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서 그 이수를 포기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초 수강신청기간 중에 교직과정 이수포기원(별지제2호서식)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중도 포기자가 이미 취득한 교직과목과 이수학점은 일반선택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한다.

**제10조 (무시험검정)**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서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확정된 자는 제4학년 2학기말(후기졸업예정자는 6월중) 소정의 기간 중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(별지제3호서식)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 (학교현장실습)** ①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(사범계학과 포함)는 졸업연도의 소정 기간내에 4주 이상의 학교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.

②학교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학교현장실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학교현장실습 및 기타 본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

④전항의 교육실습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**제11조의2(교육봉사활동)** ①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(사범계학과 포함)는 재학 중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.

②교육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자는 교육 봉사활동 확인서<별지제4호서식>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교육봉사활동 및 기타 본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⑤교육봉사활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준용하며,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정한다.

**제12조 (산업체 현장실습)** ① 공업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직과목 이수예정자는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하여야 하며, 산업체 현장실습은 비학점 필수과목으로 이수한다.

②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예정자는 제3학년 제2학기초에 소정의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3학년 2학기 동계방학 또는 4학년 1학기 하계방학 중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.

**제13조 (실습경비)** 실습 및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4조 (세칙)** 이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1>

**교직과정 설치승인전공 및 교직과정 이수자 정원**

학부(과)	설치전공	정원	비고
간호학과	간호학	3명	
계	1개전공	3명	

<별표2>

**교직과목 교과과정표**

이수 구분	교 과 목 명	학년	학점/시간		비 고
			1학기	2학기	
교직	교육학개론	2	2/2		교직이론
	특수아동의 이해	2	2/2		교직소양
	교육철학 및 교육사	2		2/2	교직이론
	교육과정	2		2/2	교직이론
	교육평가	3	2/2		교직이론
	교육봉사활동	3	2/2		교육실습
	학교폭력예방의 실제와 이론	3	2/2		교직소양
	교육방법 및 교육공학	3		2/2	교직이론
	교육심리	3		2/2	교직이론
	학교현장실습	4	2/2		교육실습
	교육행정 및 교육경영	4		2/2	교직이론
	교직실무	4		2/2	교직소양
		22(22)			

<별표3>

중등학교 ,보건교사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및 기본이수영역

학 부	전공	표시과목	기본이수영역	학점	비고
간호학과	간호학	보건	응급간호학 및 실습	2	
			건강사정및실습	2	
			기초건강과학1	2	
			모성간호학1	2	
			아동간호학1	2	
			지역사회간호학1	2	
			정신간호학1	2	
			성인간호학실습1	2	
			모성간호학실습1	2	
			아동간호학실습1	2	
			정신간호학실습1	2	
			노인간호학및실습	2	
			성인간호학1	2	
			지역사회간호학실습1	2	
			학교보건	2	





<b>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</b>				처리기간
				15일
출원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-
	주소			
출원자격	<input type="checkbox"/>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기준 제1호 및 제5호 해당자			
자격요건	출신학교명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야대학교	학부	전공
		<input type="checkbox"/> 졸업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수료		
	연 수 명			
	경 력			
<p>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출원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출 원 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 또는 날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가야대학교 총장 귀하</b></p>				
구비서류	없음.			수수료
				500원

## 교육봉사활동확인서

학과장: (인)

담당교수 : (인)

<b>신청자</b>	성명		소속	학과(학년)
	학번		전화	휴대폰( - - ) 집 ( - - )
<b>교육 봉사기관</b>	기관명		기관장	
	사업등록번호			
	종류	학교, 유치원, 복지관, 기타	전화	사무실( - - ) Fax ( - - )
	주소	우편번호 ( - )		
<b>교육봉사활동 내역</b>	<b>일자</b>	<b>시간</b>		<b>교육봉사활동내용</b>
		: - : (시간)		
		: - : (시간)		
		: - : (시간)		
		: - : (시간)		
		: - : (시간)		
		: - : (시간)		
		: - : (시간)		
		: - : (시간)		
		: - : (시간)		
	계	시간		<b>확인자 :</b> ①
<p>위 학생은 본 기관에서 상기내용의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   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_____ 학교(원, 관)장</p> <p>(직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가야대학교 총장 귀하</b></p>				

- [주의] 1. (교육)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이내로 인정함.  
 2. (교육)봉사활동교과목은 총 60시간이상 봉사하여야 함.